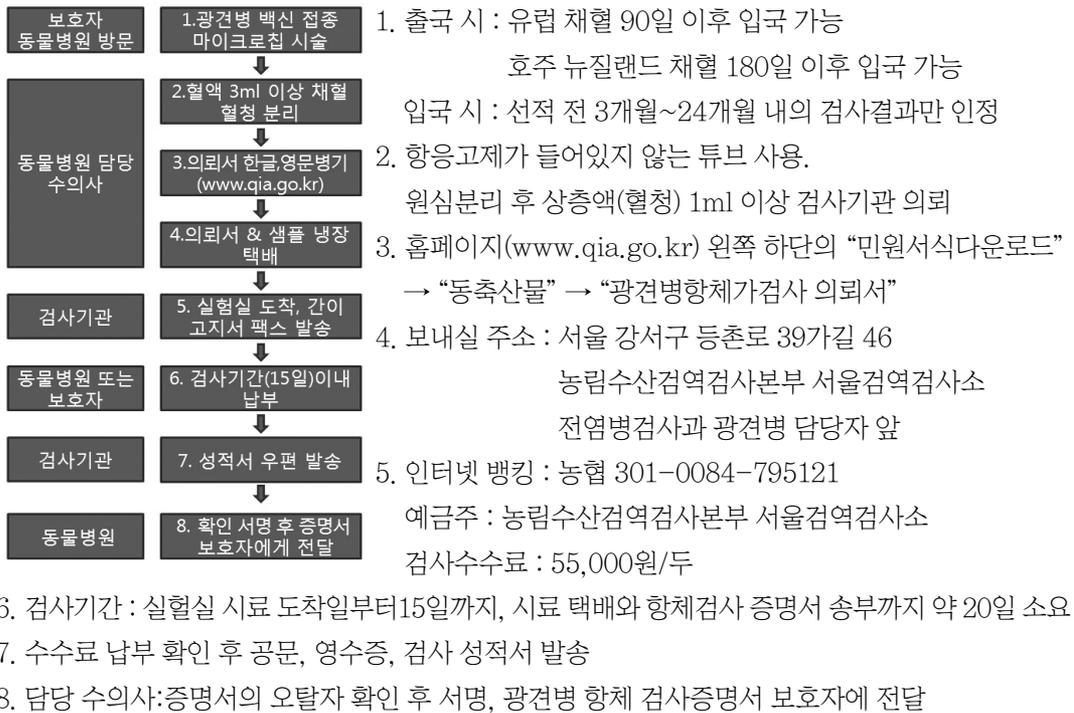


홍보자료

출국 및 입국하는 개·고양이
검역절차 안내

출국 및 입국하는 개·고양이 검역절차 안내



■ 그 외 OIE 인정 국내 광견병 검사기관

- (주)중앙백신연구소 -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(대덕밸리) 59-3, (주)중앙백신연구소 병성진단실 (Tel: 042-863-9322)
- (주)코미팜 -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6-6 (주) 코미팜 중앙연구소 동물질병진단센터 (Tel: 031-498-2121, 내선 159)

■ 기타사항

- 수출입 업무 이외 광견병 검사(교상 등) -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(안양) 질병진단과로 의뢰 (Tel: 031-467-1854)
- 광견병 검사관련 이외의 출국 및 입국 관련 사항 -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검역검사소 휴대물품검역과 문의(Tel: 032-740-2661)

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검역검사소
축산물위생검역과(02-2650-0617), 전염병검사와(02-2650-0657)

개 · 고양이 수입 검역 방법

■ 시행일 : 2011. 12. 01

■ 검역기간

-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 · 고양이
 -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확인이 되는 경우 : 당일(다만,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 까지)
- 생후 90일령 이상인 개 · 고양이
 -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.5 IU/ml 이상인 경우 : 당일
 -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: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
 -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하지 않은 경우 : 중화항체가 0.5 IU/ml 이상 확인일까지
 -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: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 접종 후 중화항체가 0.5 IU/ml 이상 확인일까지

■ 개체확인 및 광견병 중화항체검사

- 개 · 고양이는 영구 개체식별 수단인 마이크로칩 이식 필요.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.
- 개 · 고양이는 국제공인 검사기관의 중화항체 역가시험을 선적 전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받아야 함. 중화항체가는 최소 0.5 IU/ml 이상이고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증명되어야 함. (다만,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 됨).

■ 구비서류 및 휴대두수

- 검역증명서
-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: 4두 이하

■ 생후 90일령 미만 & 광견병 비발생국가산은 항체가 검사 불필요.

- 일본, 대만, 사이프러스, 호주, 뉴질랜드, 포르투갈, 아일랜드, 괌, 하와이, 사모아, 케이맨제도, 프랑스령폴리네시아, 마르티니크, 리위니옹섬, 윌리스푸투나, 알바니아, 도미니카공화국, 마케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말레이시아, 스위스